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9
----------	-----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5일

발 의 자 : 정해숙 의원 외 8명

김일영,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현주,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 1. 제안이유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행 조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수정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원 구성 조항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포  
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비차별적으로 수정함(안 제2조, 안 제  
5조)

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②)

다. 의장단 구성과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②)

라. 어린이·청소년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방안을 추  
가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5조, 「초·중등교육법」
- 「유엔아동권리협약」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2021. 08. 26.~2021. 09. 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만11세에서 만12세까지의 어린이거나, 초등학교 5~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의 청소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

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 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수를 각각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3. 다문화, 북한이탈, 근로, 장애 등 소수 어린이·청소년 등

제6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② 의원의 임기는 의원증을 받은 때부터 개시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은 때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퇴, 해촉)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서를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출받은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전학

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촉 기준은 의장단 및 지원단이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의회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

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의원이 된다.
-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라 한다) 회의장을 사용하되, 성북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각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들이 의회 운영방식·안건제안·안건이 주는 영향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의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의견반영) ① 구청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